

양형기준안



◆ 약어표 ◆

- 특 가 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 강 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특경가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도범죄 양형기준안

【 적용범위 】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은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제334조), 준강도·준특수강도(제335조), 강도상해·치상(제337조), 강도살인·치사(제338조), 상습강도 등(제341조), 특가범상 상습강도(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누범강도(제5조의4 제5항), 강도상해 재범(제5조의5), 특강범상 누범강도(특강법 제3조) 및 위 각 범죄의 미수죄(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0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加重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특강(누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加重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체포를 면밀히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범행 기간에 특히 침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자피자에 대한 교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금융기관 강도, 총기 사용(2유형),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합의, 지수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기담,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충기 단순 휴대(2유형)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상당 금의 공탁, 진지한 반성(자백), 혐사처벌 전력 없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또는 폭력·절도 실형전과(복역 후 10년 내)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가(강도상해 재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습·누범강도의 기준을 적용
- 특강(누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범행기담에 특히 침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금융기관 강도, 총기 사용(2유형),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중한 상해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합의, 자수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기담,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경미한 악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총기 단순 휴대(2유형)	계획적 범행, 비난 등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자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등증 또는 폭력·절도 실형전과(복역 후 10년 미만)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도치사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5년
2	강도살인	11년 - 13년	12년 - 15년, 무기	무기 이상

- 특강(누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2유형)	계획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행위자 기타	농아자, 자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유족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기담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자백), 범행 후 구호·호송	특강(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등증 또는 폭력·절도 실형전과(복역 후 10년 미만)

04 상습·누범강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 특강(누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 해 등 재범(특가법 제5조의5)에 해당되어 특가(누범)으로 가중처벌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강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¹⁾

1)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가10, 16(병합) 결정 참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체포를 면밀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범행가담에 특히 침작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금융기관 강도, 중한 상해, 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강도), 총기 사용, 5인 이상 공동범행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학의, 지수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기본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자백)	특기(누범)·특강(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등증 또는 폭력·절도 실형전과 (복역 후 10년 미만)(이상, 상습강도)

【 공통 원칙 】

0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처단형 범위가 15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에 의한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처단형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행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유형의 정의 】

0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일반감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 요건	적용 법 조
단순 감도	형법 333조
준감도(절도가 재물의 달환을 흥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책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	형법 335조

나. 제2유형(특수감도)

구성 요건	적용 법 조
아간에 주거침입하거나, 흡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협동하여 강도한 경우	형법 334조 1, 2항
아간에 주거침입하거나, 흡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협동하여 준감도한 경우	형법 335조

- ▶ 특강(누범)에 해당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 요건	적용 법 조
특점강력범죄 ²⁾ 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특점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특강법 3조

2) 형법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감도), 제336조(약취)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화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다른 법률에 의해 기중처벌되는 죄를 포함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일반강도)

구성 요건	적용 법 조
강도(미수법 포함)가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337조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성 요건	적용 법 조
특수강도(미수법 포함)가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337조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강도치사)

구성 요건	적용 법 조
강도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338조

나. 제2유형(강도살인)

구성 요건	적용 법 조
강도가 살해한 경우	형법 338조

04 상습·누범강도

구성 요건	적용 법 조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341조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미수법 포함)의 죄를 범한 경우	특기법 5조의4 3항
형법 333조 ~ 336조, 340조 미수법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특기법 5조의4 5항
형법 337조 미수법 포함의 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재범한 경우	특기법 5조의5

【 양형인자의 정의 】

01 일반적 기준

가. 체포를 면밀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절도범이 체포를 면밀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나. 범행가담에 특히 침직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 타인의 강압이나 해악 고지 등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 ▶ 다만, 형법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범행에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도 않은 경우

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연령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던 경우를 의미한다.

라. 5인 이상 공동 범행

-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³⁾.

마. 소극기담

- 피고인이 수동적인 참여자이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³⁾ 절도의 경우 5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기중처벌하는 사례를 강도죄의 양형기준에도 반영하기로 하는 취지(특가법 제5조의4 2항 참조)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의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중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유흥비, 도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합의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된다.

자. 경미한 폭행·협박

-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상당 금액 공탁

- 피해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의 예상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통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잔혹한 범행수법

- 잔인성은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의 면에서 볼 때 사람의 생명을 끊음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피해자에게 가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행위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법

나. 유족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참회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격/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격/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 ●, ●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 ●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에서,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0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집행유예 기준 】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중한 상해 ● 위험한 물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개전의 절(자수, 자비 등)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혐 선고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악물중독, 알코올 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기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고통을 수반

【 복수 집행유예 결정인자의 평가 원칙 】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위 ● 또는 ●에 해당하나 일반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횡령 · 배임범죄 양형기준안

【 적용범위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제356조, 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제356조, 제355조 제2항), 특경가법상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각 범죄의 미수범(형법 제359조)을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구분	감경	기본	加重
제1유형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기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일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대량 피해자 (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양산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비리 고발, 피해자 처벌불원(혐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주범이 아닌 공범, 업무상 훨령·배임이 아닌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자분 비율이 높은 경우,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훨령 범행인 경우,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유사 재산범 실형전과(복역 후 10년 미만), 범행 후 증거인멸 또는 조작

【 공통원칙 】

0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처단형 범위가 15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에 의한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처단형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유형의 정의]

- 이득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유형을 구분한다.

01 제1유형

- 아래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미수범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중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02 제2유형

- 아래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중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죄 명	적 용 법 조
형령	형법 제355조 1항
업무상 형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1항
배임	형법 제355조 2항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2항

03 제3유형

- 아래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04 제4유형

- 아래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중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05 제5유형

- 아래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중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죄 명	적 용 법 조
특경기법위반(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특경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특경기법위반(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특경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양형인자의 정의 】

01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한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예,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02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에 관한 대가 수령 없이 채무자의 자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거나,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

를 제공한 경우

-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하는 행위만을 한 경우
- 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03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04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05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한 경우
 - 연쇄부도를 유발한 경우
 - 피해자의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케 한 경우
 -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의 주주, 근로자,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예컨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범행)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6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범행의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 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을 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을 한 경우
-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을 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07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격/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격/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 ●, ●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 ●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에서,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0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집행유예 기준 】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집착 사유	재벌외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증 전과(5년 이내 집유 이상 또는 2회 이상 벌금)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기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합의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결과를 초래한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경우 ● 1인 회사 등
일반집착 사유	재벌외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범행 ● 진지한 반성 없음 ● 악물중독, 알코올 중독 ● 등증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 유예 이상 형 선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비난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내부비리고발 ●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행동기 참작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 대량 피해자를 앙산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 수령한 경우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증거인멸/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기담 ●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자분비율이 높은 경우 ●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최초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에 대한 적극적 정당화 또는 적극적 옹호를 나타내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복수 집행유예 결정인자의 평가 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위 ● 또는 ●에 해당하나 일반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위증범죄 양형기준안

【 적용범위 】

위증범죄의 양형기준은 형법상의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 모해위증죄(형법 제152조 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증죄(위 법 제14조 제1항), 특허법상의 위증죄(위 법 제226조 제1항), 실용신안법상의 위증죄(위 법 제46조 제1항), 의장법상의 위증죄(위 법 제83조 제1항), 상표법상의 위증죄(위 법 제94조 제1항)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제2유형(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준하여 처벌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준하여 처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위증이 지속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우발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제반 시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소극가담, 미필적 고의,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심급에서 범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자백),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누범이 아닌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이중 누범

【 공통 원칙 】

0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에 의한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처단형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방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유형의 정의 】

01 제1유형 : 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02 제2유형 : 모해위증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정의 】

01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위증의 내용이 요증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 일방 당사자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증거방법인 경우

02 우발적 범행

-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03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한다.

04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증언자의 학력·연령·증언 내용·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05 소극기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함이 없이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06 미필적 고의

-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자신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

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한다.

07 진지한 반성(자백)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08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09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격/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격/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 ●, ●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 ●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기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기중적 형량범위에서,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0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첨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전과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저한 개전의 징(지수, 자백 등) 소극기답 우발적 범행
일반 첨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복수 집행유예 결정인자의 평가 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위 ● 또는 ●에 해당하나 일반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무고범죄 양형기준안

【 적용범위 】

무고범죄의 양형기준은 무고죄(형법 제156조), 특가법상 무고죄(특가법 제14조)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구분	김경	기본	기증
제1유형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제2유형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김경요소		기증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타인의 감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피자휘자에 대한 교사, 중한 피해 결과 야기, 경합법 아닌 반복적 고소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지수·자백	동증 누범(증거인멸, 범인온닉, 위증 등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기담, 참작할 만한 범행 등기	수개의 혀위사실 적시
	행위자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자백),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동증 전과(증거인멸, 범인온닉, 위증 등 포함)

【 공통원칙 】

0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에 의한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처단형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방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유형의 정의 】

01 제1유형 : 일반 무고

- 제1유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 범행을 의미한다.
- 다만, 제2유형에 속하는 범행은 제외한다.

02 제2유형 : 특가법상 무고

- 제2유형은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 범행을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정의 】

01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사전에 피무고자의 축탁이나 승낙을 받고 혀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02 중한 피해결과 야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한다.

04 처벌불원 의사(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참회하고, 피무고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무고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05 소극기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모함이 없이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06 침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다른 내용의 협의 고소를 제기한 경우

※ 예시 :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인 피무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억울한 심정에서 피무고자를 강간으로 무고한 경우

- 기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07 진지한 반성(자폐)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격/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격/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 ●, ●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 ●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에서,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0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집행유예 기준 】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동종전과 ● 중한 피해결과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개전의 경(자수, 자백 등)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공법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음 ● 공법으로서 소극기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복수 집행유예 결정인자의 평가 원칙 】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위 ● 또는 ●에 해당하나 일반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